

생활체육진흥법

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음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9조제1항 신설).
- 교육감은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(안 제9조제3항 신설).
- 관리주체의 자격, 보험의 가입,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9조제4항 신설).
-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

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(안 제9조제5항 신설).

-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조제6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¹⁾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, 공립·사립학교의 경우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²⁾

그러나 안 제9조제1항에서는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 범위 내에서”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, 같은 항 단서에서 “학교행사·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”할 수 있고 “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”하도록 규정하여,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·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
2) 이 법의 위임에 따라 각 시·도는 개방의 범위, 허가 신청의 방법, 허가 기간 및 시간, 사용허가 제한의 요건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「학교 (체육)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을 수립하여 운영중임.

있음.

이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에서 학교의 장(국립학교의 경우)과 시·도 교육감(공립·사립학교의 경우)³⁾이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시설 이용의 요건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체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으로부터 ① 학교장-관리주체간 이용계약 체결 등으로 학교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, ② 학교장의 면책은 이용계약 체결시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이용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.

이에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리주체와의 이용계약 부분을 삭제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신 설>	제9조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·중등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 등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, 운동장 등(이하 “학교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. 다	제9조(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, 운동장 등(이하 “학교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

3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교육규칙의 제정)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	지·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· 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전문위원 이 화 실)